

4.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

2003. 11. 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22일 · 종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4일
다. 상정일자 : 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3.11. 3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황 의 진)

가. 개정이유

-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(2002.8.26)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제정(2003.2.27)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(신고)의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출판사·인쇄사 신규·변경신고시 수수료가 “없음”으로 규정되고, 근거법령인 출판사및인쇄사의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(종류 및 요액)의 별표 제2호(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)의 나목중 (1)출판사·인쇄사(등록·변경등록) 신청 1건 수수료액 750원을 삭제

다. 개정근거

-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제2조(신고) 중 별지 제1호서식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가. 개정사유

- 2002. 8. 26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고, 또한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2003.2.27 제정되면서,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·변경신고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(종류 및 요액)의 별표 제2호 각종 인·허가 및 항의 나목 중 “(1)출판사·인쇄사(등록·변경등록) 신청 1건 750원” 삭제

다. 검토의견

- ☐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의 근거법령 중의 하나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, 대체법으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2002.8.26자로 새로이 제정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1호 서식 중 동종의 신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에 “수수료 없음”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음
- ☐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에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규 및 변경 신고시 징수하여 오던 수수료를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, 동 수수료 징수제도 폐지에 따라 연간 20~30만원의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 論 要 旨 : 없음

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